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
KDIC 예금보험공사	보도	2021.6.15. 조간	배포	2021.6.14.
책임자	금융위 구조개선정책과장 손성은(02-2100-2910)	담당자	최상아 사무관 (02-2100-2911)	홍성찬 팀장 (02-758-0252) 김현석 팀장 (02-758-0262)
	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부장 이상우(02-758-0261)			

**제목 :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(5만원~1,000만원)을 은행을
통해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,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
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**

-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-

<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>

- ① (반환지원 신청대상) '21.7.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~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(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 - 금융회사의 계좌,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*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(다만,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)
 - *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
 -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
 - ② (신청 방법) 웹사이트(kmrs.kdic.or.kr, PC로만 접속 가능) 및 방문신청
 - *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'22년 중 개설 예정
 - ③ (반환 금액)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,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*을 차감한 잔액을 반환
 - *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 비용, 인건비 등
 - ④ (소요 기간)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1~2개월 이내*
 - *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건의 경우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
- ※ **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(1588-00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**

1 추진 경과

- 금년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(이하 ‘예보’)가 대신 찾아드리는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’ 도입을 위한 개정 「예금자보호법」(21.1.5일 공포)이 시행됩니다.
 - 금융위원회는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*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「예금자보호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였습니다.(21.6.8, 국무회의 의결)
 - * 반환지원 대상 거래 및 대상기관,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등
 - 예금보험공사는 법령에서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*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「착오송금 반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을 제정하였습니다.(21.6.9, 예금보험위원회 의결)
 - * 반환지원 대상 금액, 반환지원 절차 및 회수절차 등

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및 주요 내용

가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

- ‘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’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제도입니다.
- 최근 인터넷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
 - * '20년 중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나,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.1만건이 미반환
- 지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고,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서만 착오송금 회수가 가능하였습니다.
 - 이에따라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*이 컸으며, 소액인 경우 반환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.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나.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

① 제도 시행일 : '21년 7월 6일

- 반환지원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.
 -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② 반환지원 신청대상

❶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~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(지원대상 제외 이유) ①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으며, ② 1천만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비용 등 감안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
 -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,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❷ 금융회사^{*}의 계좌, 간편송금업자^{**}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*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투자매매·증개업자,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·수협·산림조합, 우체국 등
- ** 토스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 - 다만,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^{*}한 경우 등에는,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(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)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 - * 예시) 토스 연락처 송금,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

송금인	수취인	반환지원 대상
금융회사 계좌	→ 금융회사 계좌	○
간편송금 계정	→ 금융회사 계좌	○
금융회사 계좌	→ 간편송금 계정	×
간편송금 계정	→ 간편송금 계정	×

❸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,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.

③ 반환지원 신청 절차

- 예보 홈페이지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(kmrs.kdic.or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반환지원을 신청*할 수 있습니다.(21년은 PC로만 신청 가능함. 모바일 앱 신청사이트는 '22년 중 개설 예정)

* 본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(착오송금인이 작성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)

- PC 사용이 곤란할 경우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④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게 된 경우,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

- 예보는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*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.

* 우편 안내비용,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·송달료 등 비용, 인건비 등

※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 할 수 있음

금액대별 평균 예상지급률(예금보험공사 추정, 자진반환/지급명령)

(10만원) 86% / 82% (100만원) 95% / 91% (1,000만원) 96% / 92%

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직권으로 취소되는 경우

- 신청인이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, ②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, ③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우편, 전화,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한편, 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반환신청이 취소*되는 경우,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하게 됩니다.

*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,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,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

⑥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

-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(주민등록번호, 연락처 등)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,
 -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~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※ 다만,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경우 등, 일부 신청건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⑦ 기타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유의 사항 안내

①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사후적 보완 대책으로서,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, 경우에 따라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송금시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착오송금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-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과 관련한 채권을 매입한 후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따라서,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 예보에서 등기 우편(내용증명)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의 계좌^{*}로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
*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수도계약 사항과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

③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(1588-0037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<참고1> :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

<참고2> :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 FAQ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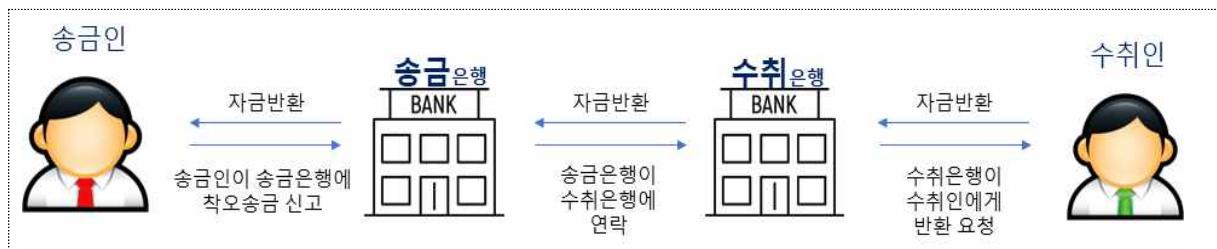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1

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세부 절차

- (1단계 :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)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 송금·수취금융회사 연락을 통해 반환을 요청

- ① 송금인(예금주)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발생 신고
- ② 송금한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에 연락
- ③ 수취 금융회사는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
- ④ 수취인이 동의할 경우, 착오송금된 금전을 송금인에게 반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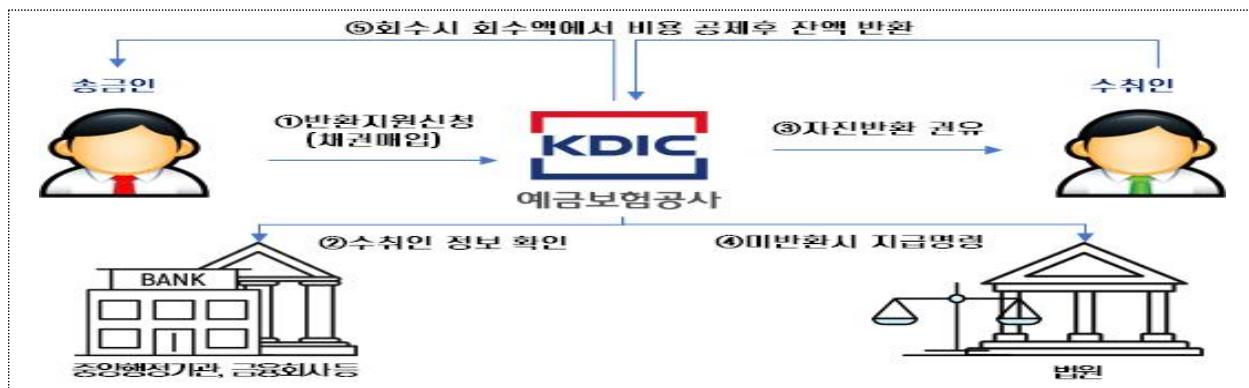
- (2단계 :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 신청)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사유로 미반환시 예보가 송금인의 채권을 매입하여 회수

*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(1단계)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제도 이용 불가

- ① 1단계 절차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한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
- ② 예보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(사후정산 방식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체결)
- ③ 예보는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후 자진반환 안내 및 회수
- ④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보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*

* 수취인 이의제기時 당사자간 소송을 통해 해결(매입계약 해제, 예보 미개입)

- ⑤ 회수 완료된 착오송금액은 비용 공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



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- 법 시행일('21.7.6일)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(착오송금일은 불산입)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?

-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~1천만원 이하입니다.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【사례1】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보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

→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(15백만원)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

【사례2】 9천만원을 송금하여야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

→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,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

3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-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 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되고 수취인이 자진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별도의 회수 관련 비용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·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?

- 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금융투자회사(증권금융 포함), 종합금융회사, 농·수협 조합, 저축은행·신협·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(보험회사 제외)가 해당됩니다.
- 또한 토스, 카카오페이 등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8조제2항제3호(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업)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(다만,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⇒ 질문6 참조)

5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?

-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(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)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6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 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?

- 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'계좌번호'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
 -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'계좌번호'가 아닌 다른 방식(예 : 연락처 송금)을 통해 송금한 경우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7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보이스피싱의 경우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」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- 즉,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
8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?

- 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·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·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·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9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
-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~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10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아닙니다.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예보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11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?

- 매입계약 체결 이후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③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④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⑤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.